#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07.31) 한국투자 윌스트리트투자은행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코드 : 70511)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 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외국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되는 외국주식가격 하락위험, 한정된 투자대상(자본시장의 자금조달 중개업무, 인수·합병업무 등을 영위하는 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증권 및 파생상품 등은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투자 월스트리트투자은행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mark>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mark> 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중개업무, 인수합병업무 등을 영위하는 외국 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비교지수 : [(MSCI World × 90%) + (CALL × 10%)]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 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 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2. 투자전략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중개업무, 인수·합병업무 등을 영위하는 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향후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할 예정이며, 운용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은행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주식 중에서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을 거쳐 상위 약 30여개의 기초종목을 선정합니다.
  - 상위 약 30여개의 기초종목 중에서 주요 Global Finance Index 편입여부, 업종별 배분 등을 거쳐 투자종목을 재선정합니다(약 25여개 종목 예상)
  - 상기에서 선정된 투자종목을 시장유동성을 감안한 시가총액을 참고로 하여 투자비율을 배분하여 투자·운용합니다.
  - 투자종목은 원칙적으로 연간단위 및 매분기단위로 리밸런싱을 실시할 예정이나, 아 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리밸런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ㅇ 투자종목기업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이 시장에 발생하는 경우
    - ㅇ 기타 투자신탁 운용상 필요한 경우 : 신규 투자종목 발굴 등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클래스			자가 부담 통보수 및			하는 투기	투자시 다기간별 (단위:	총보수		
투자비용	골네 <u>ㅡ</u> 종류	선취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비용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 선취- 오프라인 (A)	합입금 액의 1.0% 이내	1.4300	0.6280	1.7500	1.6214	265	433	607	972	1,999
수수료미 징구-오 프라인- 보수체감 (C-S1)	이	2.3020	1.5000	1.8500	1.1434	256	501	747	1,210	2,502
수수료 선취- 온라인 (A-e)	납입금 액의 0.5% 이내	1.1160	0.3140	1.2900	1.3053	183	320	463	763	1,616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C-e)	요 조화	1.4520	0.6500	1.4700	1.6414	168	342	522	899	1,957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류C-S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1년 단위로 종류C-S2, 종류C-S3, 종류C-S4, 종류C-S5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총보수·비용을 산출합니다.
- (주2) 종류A와 종류C-S1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며, 종류A-e와 종류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4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주5)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종류C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을 기산일로 한다)에 따라 종류C1, C2 수익증권으로 수익증권을 전환한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 수익증권에 한하며, 그 적용기준 및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요약정보] 중 전환절차 및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6)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종류C-S2, C-S3, C-S4, C-S5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S1 수익증권에 한하며, 그 적용기준 및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요약정보] 중 전환절차 및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L.	<u> </u>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종류	최초설정일	2023.08.01~	2022.08.01~	2021.08.01~	2019.08.01~	설정일 이후	
		2024.07.31	2024.07.31	2024.07.31	2024.07.31	이주	
수수료미 징구(C- S4)	2008.04.15	3.29	1.63	1.29	12.97	5.27	
비교지수	_	2.23	1.11	1.85	9.22	6.23	
수익률 변동성	2007.06.19	12.78	16.48	19.13	25.79	26.04	

- (주1) 비교지수 : [(MSCI World × 90%) + (CALL ×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투자신탁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투자신탁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 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운용전문**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

인력		(년)				연평균	균 수익률(	%) (해외주	식형)	경력
		,_,		집합투	운용	운용	•		<u>····</u> 용사	년수
				자기구 수(개)	규모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황우택	1986	책임 (수석)	49	22,496	24.83	7.58	36.72	29.34	8년 11개월
	정유태	1995	부책임 (책임)	4	717	_	_	36.72	29.34	6개월
	<ul> <li>(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윤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을 말합니다.</li> <li>(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구의 투자 용전문인력	
	<ul> <li>(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분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li> <li>(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다.</li> </ul>									국투자신탁
투자자 유의사항	<ul> <li>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li> <li>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li>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 추가적인구분		<u> </u>	102 0	1 1 77 E		의 주요내			
	원본손( 위험	1	서 이 투	자신탁에	투자한 투	투자자는 투	자원금액의	의 전부 또	I지 않습니 는 일부에 투자자가	대한 손
	외국 주식 하락위함	현 원 (	됩니다. 태의 악효	- · _ · 즉, 주식기	나격은 투기 급격하게	··· ··종목 발행	방회사의 영	, 영업환경, X	격하락 위험 대무상황 및 투자원금액	 실 신용상
주요 투자위험	환율변 위험	()	으로 인현 (또는 이 자증권 등 하락할 경 서 설명현 70% 이성 제거할 수 율이 목표 실이 발성	한 투자신 <sup>5</sup> 투자신탁 등은 외화를 명우 투자( 한 환율변 항 범위에/ 배정이지만 를 없습니( 표 헤지비율 행할 수 있	탁재산의 '의 모투지 로 표시되( 원금액의 동 위험을 서 시장상 , 환율변동 다. 또한 율 범위를 습니다.	가치변동위 사신탁에서) 거 거래되기 손실이 발생 문 제거하기 황에 따라 동 위험에 순자산가액 일시적으로	험에 노출 투자하는 비 때문에 : 생할 수 있 I 위해 해 탄력적으로 대한 투자 <sup>:</sup> 의 급격한 로 초과 또	됩니다. 즉 해외 주석 해당 통화 (습니다. () 외투자분 로 헤지하() 원금액 손설 변동으로 는 미달하()	국통화의 등, 이 투자 님, 채권 및 가 원화대비 이 투자신투 순자산가치 여 환율변동 실위험을 완 인해 실저 여 투자원등	신탁에서 L 집합투 I 가치가 t은 위에 I(NAV)의 등 위험을 란전히 제 II 헤지비 금액의 손
	포트폴리	오	이 투자선	· · · · · · · · · · · · · · · · · · ·	정된 투지	·대상(자본	시장의 자	금조달 중기	개업무, 인	수 합병

	집중위험	업무 등을 영위하는 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에 집중하여 투자함	함						
			대						
		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증권 및 파생상품 등은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당해 국가의 급격한 경							
		지 및 경제경쟁 등에 따는 위험에 포돌되어 있어, 당애 국가의 합력한 및 지·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 자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 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형	0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수 있습니다.							
	자금을 납입	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D+3)에 공고							
매입	매입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D+8)에 관							
방법	<b>우</b> : 자금을	과 우에 사람들 답입한 경 전배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답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 방법 오·황마처그의로부터 5여억의(D+1/)에							
±1 mil	일(D+3)에 공 여 매입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영업일(D+9)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환매 수수료	없음	급	,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 구 총좌수							
기준가격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판매:								
	구분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b> 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							
	수익자	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							
71.11		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연금저축계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 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일반 투자신탁 투자							
		HOLE HOLE HOOL BOELLE	.						
	교세 회직연금제9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						
	퇴직연금제의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투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						
	퇴직연금제의 의 세제 해외주식투기 전용집합투기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투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						
	퇴직연금제의 의 세제 해외주식투기 전용집합투기 증권저축 가 자에 대한 1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투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						
	퇴직연금제의 의 세제 해외주식투기 전용집합투기 증권저축 가 자에 대한 대 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의 어 전환	를 함 하						
	퇴직연금제의 세제 해외주식투가 전용집합투가 증권저축 가 자에 대한 세 1) 수익증권 다 마매회사 다)에 따라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의 어 전환 는 수익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종류C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을 기산일로 한 나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합니다.	를 타 타 하						
전환절 <b>차</b> 및 방법	퇴직연금제의 의 세제 해외주식투기 전용집합투기 증권저축 가 자에 대한 기 세 1) 수익증권 다)에 따려 다)에 따려 지 주익지 종류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의 전환 는 수익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종류C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을 기산일로 한 나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합니다. 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3년에 해당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을 종류C1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를 타 하 하						
전환절차 및 방법	퇴직연금제의 의 세제 해외주식투기 전용집합투기 증권저축 가 자에 대한 기 세 1) 수익증권 다)에 따려 1. 수익지 종류인 2. 수익지 종류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투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의 전환 는 수익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종류C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을 기산일로 한 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합니다. 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3년에 해당되는 날에 당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						

1. 수익증권의 전환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2. 수익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날을 자동전환일로 하며, 자 동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자동전환일로 합니다. 3. 수익증권의 전환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자동전환일의 각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 증권은 종류C-S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S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S1 수익증권 을 종류C-S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S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S2 수익증권 을 종류C-S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S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S3 수익증권 을 종류C-S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종류C-S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S4 수익증권 을 종류C-S5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 업자 (대표번호 : 02-2055-5555 / 인터넷 홈페이지 : kim.koreainvestment.com) 모집ㆍ매출 모집기간 1조좌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총액 효력 2025년 2월 7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발생일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회사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참조 관한 사항(75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 -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 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수수료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개월이 경과되는 선취(A)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 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 기구의 수수료 판매 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 종류 후취 니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 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 수수료 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 미징구 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 (C) 다. 따라서 1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경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 (e)

			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 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mark>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mark>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수익증권(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 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 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 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 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 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 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 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 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